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89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 박영순ㆍ이용빈ㆍ안민석

문진석 · 임호선 · 허 영

황운하 • 박범계 • 조오섭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이하 "진료수가"라 함)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수가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수가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료수가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사고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 상("기왕증"을 말한다)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과잉진료 및 허위청구 등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실제 진료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 가 있음.

이를 위해서 그 환자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정부, 건 강보험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보험회사등이 보유한 기존의 심사자료를 전문심사기관이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의 자료수집 범위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수집 대상 또한 의료기관으로 제한됨으로써 심사제도 전반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시에 사용했던 자료 수집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제2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2017. 02. 14.)으로 자동차보험의 자료수집 근거로 사용할 수없게 됨으로써 진료수가의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근거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0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료를 의료기관"을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 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을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진료기록"을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으로, "조사기록"을 "조사기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제 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①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진료기록"을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으

로, "조사기록"을 "조사기록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	②
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u>자료를 의료</u>	주민등록·출입
<u>기관</u> 에 요청할 수 있다.	<u>국관리·진료기록</u>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
	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
	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
	의 공공단체 등
③ 제1항 또는 <u>제2항의 경우</u>	③ <u>제2항에 따른</u>
<u>의료기관</u> 은 정당한 사유가 없	<u> 요청을 받은 기관 등</u>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보험회사등, 전문심사기관	8
및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종	
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에 따른 <u>진료기록</u>	<u>주민등록·</u>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출입국관리·진료기록
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	<u>조사기록 등</u>
람의 비밀이나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1.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u>진</u>

⑨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및 보험요율산출기
관에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u>한다.</u>
⑪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
치단체, 의료기관, 보험요율산
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전문심사기관에 제
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
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세46조(벌칙) ①
1

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 은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2. ~ 4. (생 략)

②・③ (생 략)

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u>조사기록 등</u>

- 2. ~ 4. (현행과 같음)
- ② ③ (현행과 같음)